

'99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99-33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05. 29.
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골 소류지 편입부지 매입

2. 재산의 표시

종별	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	비고
토지	남하면 무릉리 735-1외 4필지	전,답,임	3,472m ²	25,243천원	

※ 사실상 소류지

3. 취득사유

- 1993년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여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함
- 민원 발생 경위
 - 1967년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 설치시
 - 토지 소유자와 수혜 농민들간 매년 벼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
 - 그후 현지 여건이 크게 변화
 - 소류지 설치당시 수혜면적 55.1ha
 - ⇒ 전전환, 축사건립, 합천댐 수몰등으로 수혜면적이 9.9ha로 감소
 - 사용료 지급에 차질 초래하여 군에서 당해토지를 매입해 줄것을 요구

4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: 공유재산의 관리계획
 - ※ 중요재산의 범위 : 1,000m²이상 취득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: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서

